「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모집 공고

3대 메가·7대 시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이노비즈)을 발굴하여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자, 「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선발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회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정부가 발표한 국가 메가 프로젝트(3대 메가*, 7대 시드**) 관련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이노비즈 확인기업)을 선발하여 중견기업 도약 등 혁신형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 **(선발규모)** 총 50개사 이내

□ **(지원내용)** 1년차 프로그램 연계 · 컨설팅으로 기업별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2년차부터 R&D・인력・수출・판로・금융・IPO 등 연차별로 연계 지원(「3.지원 내용」 참조)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요건	내용	확인 방법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기업을 포함한 규모(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충족)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기준)
② 혁신형 확인	메인비즈 확인 보유(유효기간 내)	협회 전산 확인 (별도 제출 불요)
③ 지원분야	3대 메가·7대 시드 분야[붙임1] 중 1개 이상 해당	분야 인정 증빙 (아래 참조)

※ 메인비즈와 이노비즈를 모두 보유한 기업은 1개 협회를 선택하여 1건만 신청 (양 협회에 중복 신청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 분야(3대 메가·7대 시드) 해당 여부 증빙 필요

○ 신청 시 [붙임1]의 10개 분야 중 주 분야 1개를 선택(2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부 분야 1개를 추가 선택 가능)

- [붙임1]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도 해당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서비스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아래 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여 선택한 분야와의 관련성을 증빙하여야 함(선택한 분야의 품목·기술과 관련된 것에 한함)

- 요건검토(적부) 단계에서 제출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1회 보완을 요청 예정(미 회신 시 부적격 처리)
- 요건검토 시 제출 증빙과 함께 「혁신성장 공동기준」 기반 첨단산업 분류 품목 DB를 참고하여 분야 해당 여부를 추가로 검증할 수 있음

□ **(제외대상)**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동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연번	제외 대상
1	**'25~'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및 '27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신청기업**
2	초격차 스타트업 1000+(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딥테크 팁스)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다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이 최종 연차(협약 종료 연도)인 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3	월드클래스300 플러스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4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 **< 예외 대상 >** ①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기업) ②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6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청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재 금융거래가 제한된 자(기업)
7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8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9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 또는 진출예정인 자 (기업)
10	그 밖에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유죄판결을 받아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선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3 지원 내용

□ **(지원개요)** 기업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진단(1년차)을 시작으로, 연차별 성과 점검 결과에 따라 스케일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4~5년)

□ **연차별 지원체계 요약**

연차	핵심 전략	주요 지원	마일스톤(예시)
1년차 (2027년)	성장모델 수립	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업 성장 로드맵 작성, 중장기 마일스톤 설정
2년차 (2028년~)	도약 및 고도화	R&D, 수출·인력, 융자·대출	기술·특허 확보, 신제품 개발
3년차	스케일업	R&D, 수출·인력, 판로·공공구매, 투자·보증·융자·대출	원천기술 상용화, 매출 증가, 설비투자·증설
4년차 이후	중견 도약	IPO·M&A·가업승계, 수출·해외진출, 보증·융자·대출	코스피·코스닥 상장 등

* 지원내용 및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1년차) 기업맞춤형 투트랙(Two-Track) 지원**

○ **(Track 1) 맞춤형 컨설팅 진단**

- (지원대상) 전체 선정기업(50개사 이내)
- (지원내용) 맞춤형 진단 및 컨설팅(약 2개월) 연계

○ **(Track 2) 「도약(Jump-Up) 프로그램 중 점프업 500」 추천**

- (추천대상) 전체 선정기업(50개사 이내)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위 30개사* 이내

 * 업력 7년 이상 및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달성 중소기업(단, 최근 3개년('23~'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준 매출액 500억 원을 1회 이상 달성한 기업)

-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도약(Jump-Up) 프로그램 중 점프업 500*」 추천

 * '점프업 500(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평가우대(서면평가 면제) 및 최종 평가 결과 미선정 기업은 Track 1 연계 지원으로 전환)

□ **(2년차 이후) 개별기업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한 패키지 지원**

※ 각 지원은 해당 사업의 공고·심사 절차와 예산 범위에 따라 결정되고,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확대되는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확정 후 시행

□ **(연차별 성과 점검)** 연차별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한해 후속 지원을 지속하고 미달성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탈락)하는 성과평가 환류 체계를 운영

○ 선정기업은 매년 성과평가 점검을 위한 자료(매출・고용・수출 현황 등)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4 선발 절차

□ **(선발체계)** 신청 접수 및 요건검토는 신청한 협회에서 진행하고, 최종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

단계	주관	내용
① 신청 접수 및 요건검토	메인비즈협회	신청자격, 분야 인정 증빙, 제외 대상 여부 확인
② 1단계 성장성 검증	기보· 한국평가데이터	K-TOP·KOGPS를 활용한 기술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평가
③ 2단계 서면평가 (혁신성장계획서 등)	선정위원회	50개사 이내 최종 선정 * (우대사항) 지역 균형 발전과 비수도권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평가 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는 우대 가점이 적용될 수 있음
④ 점프업 500 추천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기업 중 상위 30개사 이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

○ **(1차 성장성 검증)** 두 평가의 반영 방법과 통과 기준은 선정위원회가 정하며, 양 협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 기술・혁신성 평가(K-TOP*)와 전 산업 성장성 평가(KOGPS**) 실시

* 기술·혁신 역량 진단 (K-TOP):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및 혁신성장 역량 평가를 통한 기술 기반 경쟁력 검증

** 범용 성장성 분석 (KOGPS): 한국평가데이터의 전 산업 빅데이터 기반 매출 증가율·수익성 중심의 잠재 성장력 평가

○ **(최종선정)** 민간위원이 포함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평가항목(안)	주요 내용(안)
분야 적합성 및 기술경쟁력	3대 메가·7대 시드 분야와의 연관성, 핵심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지식재산·인증 등
사업성	주력제품(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수준, 시장의 인지도 등,
경영능력	경영계획 수립 절차, 경영성과 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 수준 등
도약적합성	신성장 분야 연관성(핵심기술, 품목 등), 개척 역량·의지, 주요 수요처, 해외시장 진출 실적 및 계획 등

○ **(결과 통보)** 단계별 통과기업은 신청한 협회에서 기업에 개별 통보

※ 단계별로 탈락한 기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11.(수) 17:00까지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하단 링크**를 이용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

- **메인비즈기업** 신청링크 바로가기

사이트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기업정보 확인	▶	서류 업로드 & 제출	▶	대기 후 제출내역 확인
사이트 접속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기업 담당자 정보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		기업 결산월 등 기업정보 확인		제출서류 확인 * 제출연도는 자동설정		제출 로딩 대기 후 제출내역 확인 * 오류 등 발생시 재제출

*** 제출 완료까지 로딩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①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1인이 온라인 신청하되, 공동대표 전원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윤리준수 약속'을 작성·날인하여 별도 제출(첨부 업로드)

② 메인비즈와 이노비즈를 모두 보유한 기업은 1개 협회 선택

③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 권장

④ 고성장 혁신형기업 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필요서류 업로드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제출이 완료됨. "제출내역조회"를 통해 현황 확인 가능, 마감 전까지 수정 및 재제출 가능

⑤ 우편·방문·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1단계 통과기업만 추가서류 제출

○ **1단계 : 신청 시(전체 신청기업)**

연번	서류명	제출방법
1	참여신청서	**고성장 혁신형기업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직접 압축파일로 업로드** ㉠ **해당서류 연번 순서대로 PDF형태 압축파일 압축, 업로드** ㉡ **파일명 : 연번_서류명_기업명**
2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자격 확인 서약서(법인/대표개인)	
3	신청자격 확인 서약서	
4	중소기업확인서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	
8	법인세신고자료	고성장 혁신형기업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정보조회·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대체
9	부가가치세신고자료 및 붙임자료(부가가치세 상세내역)	
10	원천세신고자료	
11	사업자등록증명원	
12	최근 4개년(2022~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 1단계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①~③ 참여신청서[서식1], 기업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2-1],대표자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 2-2]** : 공동대표·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참여신청서에 날인하고,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서식2-2])는 대표자별로 각각 작성·서명하여 제출. 고성장 혁신형기업 신청링크에 서류 업로드

- **④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제출,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인정

- **⑤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 제출(법인만 해당)

-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발급 제출, 근로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

- **⑦ 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 : 해당 분야별 1개이상 제출

< 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서류 >

연번	증빙항목	인정 기준	제출서류
1	납품 실적	2024. 1. 1. 이후 해당 분야 품목 (부품·소재 포함) 납품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주요 3건 이내)
2	수출 실적	2024. 1. 1. 이후 해당 분야 품목 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3	정부 R&D	신청기준일 기준 해당 분야 관련 정부 R&D 과제 수행 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완료	협약서 및 과제 요약서
4	특허	신청일 기준 존속 중인 해당 분야 품목·기술과 직접 관련된 국내외 등록특허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며, 대표 특허 3건 이내로 제출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등록증 사본 보유 특허목록 (등록번호·명칭·등록일·권리자·분야 연관성 서술) ※ 공동권리자인 경우 지분 및 공동권리자 명시, 출원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5	계약·실증	2024. 1. 1. 이후 유효한 계약·실증 실적 해당 분야 수요기업·기관과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경우 공급계약 또는 발주서(구매주문서, P/O) 공동개발 계약 또는 실증(PoC) 협약 대표 실적 3건 이내	(필수) 계약서·발주서·협약서 사본 - 계약당사자, 계약일, 대상 품목·기술, 계약금액(또는 범위)이 확인되는 부분 (필수) 이행 증빙 1종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중 택1

- ⑧~⑬ 1차평가 서류 :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제출, 미동의시 성장성·잠재력 평가 불가, 납세증명서는 업로드 가능

○ 2단계: 1차 통과기업만 제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메인비즈기업 제출처: research@mainbiz.or.kr

서류명	제출방법
혁신성장계획서[서식3]	메인비즈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 기한(1차 통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최종 선정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됨(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6 추진 일정

① 신청 접수	② 요건 검토	③ 1단계검증 (성장성 검증)	④ 2단계검증, 최종 선정	⑤ 점프업500 추천
메인비즈협회	각 협회	각 협회	선정위원회 (공동)	선정위원회 (공동)
10.28~11.11	11월중	11월말	12월초	12월중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신청기업에 개별 안내

7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신청 및 접수 관련**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접수 가능
- (서류 유효기간 및 제출기한 준수) 공고문 상의 발급기준 및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기한 미준수·유효기간 만료 등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및 심사 관련**

- (서류 검증 및 자격 제외)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신청서 허위 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및 선정 취소 처리

○ **선정 후 의무 및 제재 관련**

- (혁신형 기업 확인 유지 의무) 선정기업은 사업지원 기간 메인비즈(Main-Biz) 자격을 지속 유지하여야 하며, 확인 취소 등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재 및 환수 조치)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거짓 신청, 지원금 부정사용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계 지원사업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정 취소,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필요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중견기업 지위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상 졸업 유예제도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은 동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중기업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상실하는 즉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사후 성과관리 협조) 최종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이력관리, 성과 점검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후속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기관	부서	연락처/이메일주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경영혁신연구원	02-2230-2108,2184,2111 research@mainbiz.or.kr

*** 시스템 오류 및 업로드 장애 문의 : KODATA 최신화센터 (02-3279-6500)**

붙임 1 3대 메가·7대 시드 분야별 참여 범위

※ 아래 품목은 예시이며, 열거되지 않은 품목도 해당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서비스 가치사슬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음(신청서 [서식1]의 해당 분야에 체크)

번호	구분	분야	중소기업 핵심 연계산업	주요 참여 분야·품목(예시)
1	3대 메가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AI SW	HBM·첨단패키징 소재·장비, 검사·계측·테스트 장비, 팹리스·설계IP, AI 가속기, 전력반도체, sLLM·RAG·AI Agent
2		**피지컬 AI**	로봇·센서·제어·자동화	감속기, 모터·액추에이터, 엔코더, 힘·토크센서, 머신비전, 제어기, 엣지AI, 로봇 SW
3		**AI 데이터센터**	전력·냉각·공조·통신 인프라	공조기, CDU, 수랭·액침냉각, 열교환기, UPS·PDU, 전력변환장치, 랙, 광통신·케이블
4	7대 시드	**SMR**	원전 기자재·계측제어	밸브·펌프, 열교환기, 배관·압력기기, 원전용 소재, 센서·계측제어, 비파괴검사·안전진단
5		**핵융합**	초전도·진공·극저온·정밀장비	초전도 부품, 진공펌프·챔버, 극저온 냉각장치, 고출력 전원장치, 플라즈마 진단·정밀계측
6		**재생에너지**	전력변환·ESS·전력망·발전부품	인버터·PCS, ESS 부품, 전력변환장치, 태양광 소재·장비, 풍력 베어링·기어, 수전해 부품
7		**양자**	광학·레이저·극저온·정밀계측	레이저·광학부품, 광검출기, 극저온 냉각기, RF·마이크로파 장비, 정밀측정·제어장비
8		**우주·항공**	위성·항공 소부장·시험장비	위성부품·안테나, 추진계 부품, 항공 전장품, 복합소재, 초정밀가공, 열제어, 시험·검사장비
9		**첨단바이오**	바이오 소부장·생산·분석장비	바이오리액터, 배양·정제장비, 분석·진단장비, 배지·시약, 일회용백·필터, 바이오센서, CRO·CDMO
10		**첨단 공급망**	핵심광물·첨단소재·재자원화	희토류·핵심광물 소재, 특수금속, 고기능 소재, 정밀부품, 재활용·정제장비, 공급망 관리 SW

□ 분야 선택 시 참고사항

○ 하나의 품목이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예: 열교환기는 AI 데이터센터와 SMR, 진공펌프는 반도체와 핵융합) 매출 또는 공급 실적이 더 큰 분야를 주 분야로, 다른 분야를 부 분야로 선택

○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위 분야의 품목에 사용되거나 공급된다는 사실을 「2.신청자격」의 인정 증빙으로 확인받아야 함

붙임 1-2 지원제외 업종

업종 분류	분류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	4722 중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중	주점업
정보통신업	5821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3	노래연습장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업종 분류는 국가데이터처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주업종 외에 위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제외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과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른 경우 실제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위 업종 외에도 사행성·향락성 업종 또는 부동산 임대·공급업, 금융업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음

붙임 2	제출 서식

[서식 1] 참여신청서

고성장 혁신형 기업 참여 신청서

<table>
<tr><td rowspan="8">기업 현황</td><td colspan="2">기 업 명</td><td></td><td>설립일자</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본사)</td><td>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현재 업태/종목</td><td></td><td>주생산품
(산업분류코드)</td><td>()</td></tr>
<tr><td colspan="2">매출액('25년 실적)</td><td>백만원</td><td>종업원</td><td>명</td></tr>
<tr><td colspan="2">대 표 자(생년월일)</td><td>(. .)</td><td>홈페이지</td><td></td></tr>
<tr><td rowspan="3">연락처</td><td>대표(이사)</td><td colspan="3">전화:() - 휴대폰:() - E-mail :</td></tr>
<tr><td rowspan="2">담당자</td><td colspan="3">직위: 성명: 전화: () - 휴대폰: () -</td></tr>
<tr><td colspan="3">E-mail : FAX: () -</td></tr>
<tr><td rowspan="2">소재지</td><td>본사</td><td colspan="3">주소 :</td></tr>
<tr><td>지사</td><td colspan="3">주소 :</td></tr>
<tr><td rowspan="2">신청 분야</td><td rowspan="2">진출 유형
(해당사항 체크)</td><td>주 분야</td><td>☐ 반도체 ☐ 재생에너지
☐ 피지컬 AI ☐ 양자
☐ AI 데이터센터 ☐ 우주·항공
☐ SMR ☐ 첨단바이오
☐ 핵융합 ☐ 첨단공급망</td><td>주요 품목</td><td></td></tr>
<tr><td>부 분야
※해당시</td><td>☐ 반도체 ☐ 재생에너지
☐ 피지컬 AI ☐ 양자
☐ AI 데이터센터 ☐ 우주·항공
☐ SMR ☐ 첨단바이오
☐ 핵융합 ☐ 첨단공급망</td><td>주요 품목
※해당시</td><td></td></tr>
<tr><td rowspan="2">네트워킹 역량</td><td colspan="2">투자유치 실적</td><td colspan="3">☐ 없음 ☐ 있음(유치실적: 백만원)</td></tr>
<tr><td colspan="2">수출 실적</td><td colspan="3">☐ 없음 ☐ 있음(수출실적: US$ (최근 1년 기준))
(주요 수출국: ① ② ③)</td></tr>
</table>

상기와 같이 고성장 혁신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이사) : (직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귀중

[서식2]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및 신청자격 확인 서약서

[서식2-1] 기업(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신청기업용)

당사는 「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는 메인비즈 인증 등 협회의 다른 업무에 관한 동의와 별개로, 본 사업의 목적에 한하여 받습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수집·이용 목적	신청 자격·제외 대상 확인, 1차 성장성 검증 및 최종 선정평가, 선정기업 지원 및 연차별 성과 점검, 사업 종료 후 사후 성과관리, 민원·분쟁 처리
수집·이용 항목	(기업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홈페이지 (재무·성과정보) 재무제표, 매출·고용·수출 현황, 투자유치 실적, 지식재산·인증 정보, 신청서류 기재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 정보 (공공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행정처분, 정부 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임금체불·산업재해 공표 등
보유·이용 기간	(선정기업) 사업 종료 후 5년까지(사후 성과관리 기간) (미선정기업) 선발 절차 종료일부터 [1]년 까지 보유하며, 이 기간에는 이의신청·민원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신청·평가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및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② 제공에 관한 사항 (필수)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점프업 500 추천 및 연계 지원 (Track 1 추천기업에 한함)	기업정보, 재무·성과정보, 혁신성장 계획서, 평가 결과	추천일부터 해당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관리 및 성과 분석	선정 결과, 연차별 성과 점검 자료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호 간	중복 신청 확인 및 선정위원회 공동 심의	기업정보, 신청 내역, 평가 결과	①의 보유·이용 기간과 같음
선정위원회·평가위원회 위원(외부 전문가 포함)	최종 선정 평가	신청서, 혁신성장 계획서, 평가 관련 증빙	평가 종료 즉시 회수·파기

※ 제공받는 자는 위 목적 외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지 않으며, 목적 달성 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귀사(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제공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신청·평가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및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③ 조회에 관한 사항 (필수)

조회 대상 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한국평가데이터 등), 한국무역통계진흥원 **[D-4]**
조회 목적	제외 대상(신용도 판단정보) 확인, 1차 성장성 검증, 수출 실적 정합성 확인
조회 항목	②의 제공 항목 중 신용도 판단정보 및 재무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수출실적
조회 동의 효력기간	동의 일로부터 선발 절차 종료 시까지(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시까지)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회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신청·평가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및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④「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필수)

수집·조회·활용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 소관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양 협회
목적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이력 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항목	지원 이력 정보(신청일, 지원내용), 기업식별정보, 재무정보(매출액 등), 고용정보, 기업현황
효력기간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본 사업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인 경우 제공하지 않음

위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정보주체 권리 안내

- 귀사(귀하)는 신청한 협회에 본인 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협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합니다.
- 협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 위 동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양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공 받는 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이사) : (직인)

[서식 2-2]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대표자용, 공동 · 각자대표는 전원 각각 작성)

본인은 「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로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수집·이용 목적	신청 제외 대상 확인(대표자 신용도 판단정보, 참여제한, 횡령·배임 등 유죄판결 여부), 공동·각자대표 요건 확인, 사업 관련 연락
수집·이용 항목	(일반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 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음. 신용정보 조회에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회기관(신용정보회사)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B-2]**
보유·이용 기간	[서식2-1] ①의 보유·이용 기간과 같음 **[B-9]**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신청·평가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및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② 제공에 관한 사항 (필수)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한국평가데이터(주)	대표자 신용도 판단정보 조회·확인 (제외대상 제4호)	성명, 생년월일	조회 결과 회신 후 지체 없이 파기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호 간	중복 신청 확인 및 공동 심의	성명, 생년월일, 확인 결과	[서식2-1] ①의 기간과 같음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③ 조회에 관한 사항 (필수)

조회 대상 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한국평가데이터 등)
조회 목적·항목	신청 제외 대상 확인을 위한 대표자 신용도 판단정보
조회 동의 효력기간	동의일부터 선발 절차 종료 시까지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회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신청·평가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및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정보주체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및 유출 시 통지·배상에 관한 사항은 [서식2-1]의 「정보주체 권리 안내」와 같습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

[서식 2-3]

신청 자격 확인 서약서

본 기업은 「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모집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또는 관련 사실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 제외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이사) : (직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귀중

[서식3] 혁신성장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Ⅰ. 기업개요 및 경영능력

□ 신청배경 및 경영계획 수립 절차

신청배경	사업 신청 결정 과정, 내부 검토 및 대표자/이사회 의결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기술
경영계획 수립 절차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절차, 사업 계획의 수립·수정 주기 및 내부 의사결정 체계 기술
내부 통제 및 경영성과 관리 체계	경영성과(매출·이익·고용 등) 모니터링 체계,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시스템 현황 기술

□ 참여인력 구성(최소 인원 기준 없음)

연번	성명	직위	재직 기간	담당업무	비고
1				경영지원	대표이사/총괄
2				R&D	
3					
4					
5					
6					
7					
8					

Ⅱ. 주력사업 현황 및 기술경쟁력

□ 주력제품·서비스 개요 및 사업성

주력제품 및 매출 구조	주요 제품·서비스별 매출 비중(%), 밸류체인 상 위치(완제품, 1차 벤더 OEM 등) 제시
시장 점유율 및 브랜드 인지도	국내외 목표시장 내 자사 점유율 수준, 브랜드/제품 인지도 및 주요 수요처 현황
경쟁 우위 및 강점	주요 경쟁사 대비 자사 제품·서비스의 핵심 경쟁 우위 요소 기술

□ 보유 핵심기술 및 확장 가능성(분야 적합성 및 기술경쟁력)

3대 메가·7대 시드 분야 연관성	해당 신성장 분야와의 직접적 연관성 및 기술적 부합성 기재
핵심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독자 기술 보유 여부, 경쟁 기술 대비 우위점 및 진입장벽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보유 기술을 타 산업, 신제품, 신시장으로 확장·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
지식재산 및 인증 현황	관련 특허(등록/출원), 국내외 표준·품질 인증, 기술상 수상 실적 등

Ⅲ. 신사업 · 신시장 진출 전략 및 도약접합성(TO-BE)

□ 신사업·신시장 진출구상

진출 분야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제품·기술·지역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예: 2차전지 모듈 하우징 / 북미 ESS 시장 진출)
진출 방식	[] 신시장 개척 (기존 제품·기술 → 신규 산업·고객·지역) [] 신제품 개발 (신규 제품·기술 → 기존 시장·고객) [] 사업 다각화 (신규 제품·기술 → 신규 시장)
개척 역량 및 추진 의지	현 주력사업의 자산을 발판으로 신사업 진출을 결정하게 된 계기 및 추진 의지

□ 목표시장 성장성 및 차별화 전략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률	자사가 실제 진입 가능한 목표시장의 규모 및 연평균 성장률(CAGR)을 객관적 출처와 함께 제시
주요 수요처 및 레퍼런스	신시장 내 타깃 고객/수요처, 해외 진출 실적 및 확보된 네트워크 현황
경쟁 및 진입장벽 극복 전략	시장 내 주요 경쟁사 분석 및 자사의 차별화된 시장 진입 전략

□ 경영성과 목표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주요 매처(수요처)
경영성과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고용	총 임직원 수					
	연구·기술					
	생산직					
	청년고용 (만 34세 이하)					

□ 진출 로드맵 및 목표(매출 성장 시나리오)

성장목표	목표매출 도달 연도와 그 시점의 매출·영업이익·고용 규모, 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제시 (예시 : '29년 매출 1,000억원, 신사업 비중 40% 이상, 고용 160명 달성)
진출 로드맵	현재 매출에서 목표매출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기존사업 확대분과 신사업·신시장 추가분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단계·마일스톤과 함께 기술

Ⅳ. 신사업 준비 현황 및 자원 배분 계획

□ 신사업·신시장 진출 준비 현황

기술·제품 준비	신사업 관련 기술·시제품·특허의 확보 수준을 개발 단계와 함께 기술 (예시 : 개념설계 / 시제품제작 / 성능검증완료 / 양산준비 등)
인력·설비 준비	신사업을 담당할 인력·조직과 생산·연구 설비의 확보 수준을 현재 인원·설비 기준으로 기술(전담조직 유무, 겸직 여부 포함)
시장·판로 준비	목표시장 진입을 위한 고객 접점·인증·레퍼런스 확보 수준을 상대방·시점과 함께 기술 (예시 : 바이어 접촉, 샘플 공급, 인증 취득·진행, 시범 납품 등)

□ 부족 역량 및 진출 리스크

구 분	예상부족 역량 및 발생리스크	자체 대응 및 외부자원 연계 해소방안
기술·개발		
인력·조직		
시장·판로		
자금·투자		
인증·규제		

* (부족 역량·리스크) 신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부족지점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기술
* (해소 방향)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계획인지 기술

□ **자원배분 원칙 및 리스크 관리**

기존사업과 신사업 간 자원 배분	인력, 예산, 설비 등 한정된 자원의 배분 원칙 및 대표자 주재 의사결정체계
리스크 제어방안	신사업 추진 중 발생 가능한 경영·기술·시장 리스크 관리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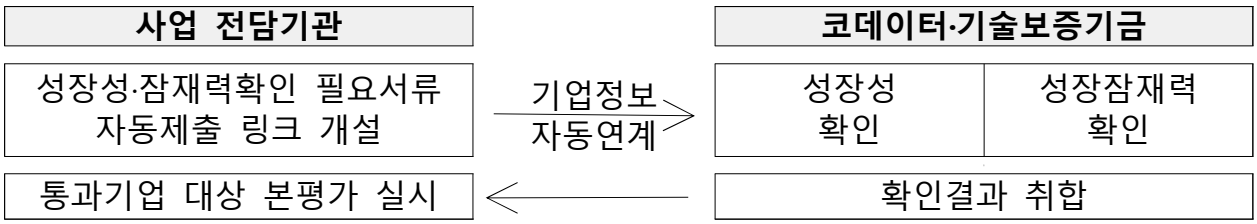
붙임 3 성장성 · 잠재력 확인 개요

□ 성장성 · 잠재력 확인

○ **(개요)** 성장성·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편 시범적용 실시

○ **(확인기준)** 성장성 확인, 성장잠재력 확인 중 1개 이상 통과기업을 대상으로만 선정평가 실시

<성장성·잠재력 확인 시행 체계>



① **(성장성 확인)** 최근 3년 **평균(CAGR) 매출액** 또는 **고용 증가율 5% 이상**

* 초기창업기업 등 2개년 이상 매출·고용 정보가 없는 기업은 성장잠재력만 확인
** 매출·고용정보가 2~3개년만 있는 경우 최근 1~2년 매출·고용증가율로 확인

② **(성장잠재력 확인)** AI 기반 기업평가 2개 모델 중 1개 이상에서 기준 점수 이상 획득

- K-TOP Tech-Index(기보) : 60점(100점 만점)

* (K-TOP Tech Index) 기술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예측

- KOGPS(KODATA) : 4등급 이상 (1(최상) ~ 10등급)

* (KOGPS) 재무, 특허, 고용, ESG를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기반의 유망 중소기업 선별

- 아래 링크 접속 후 재무제표, 부가세신고서 등 등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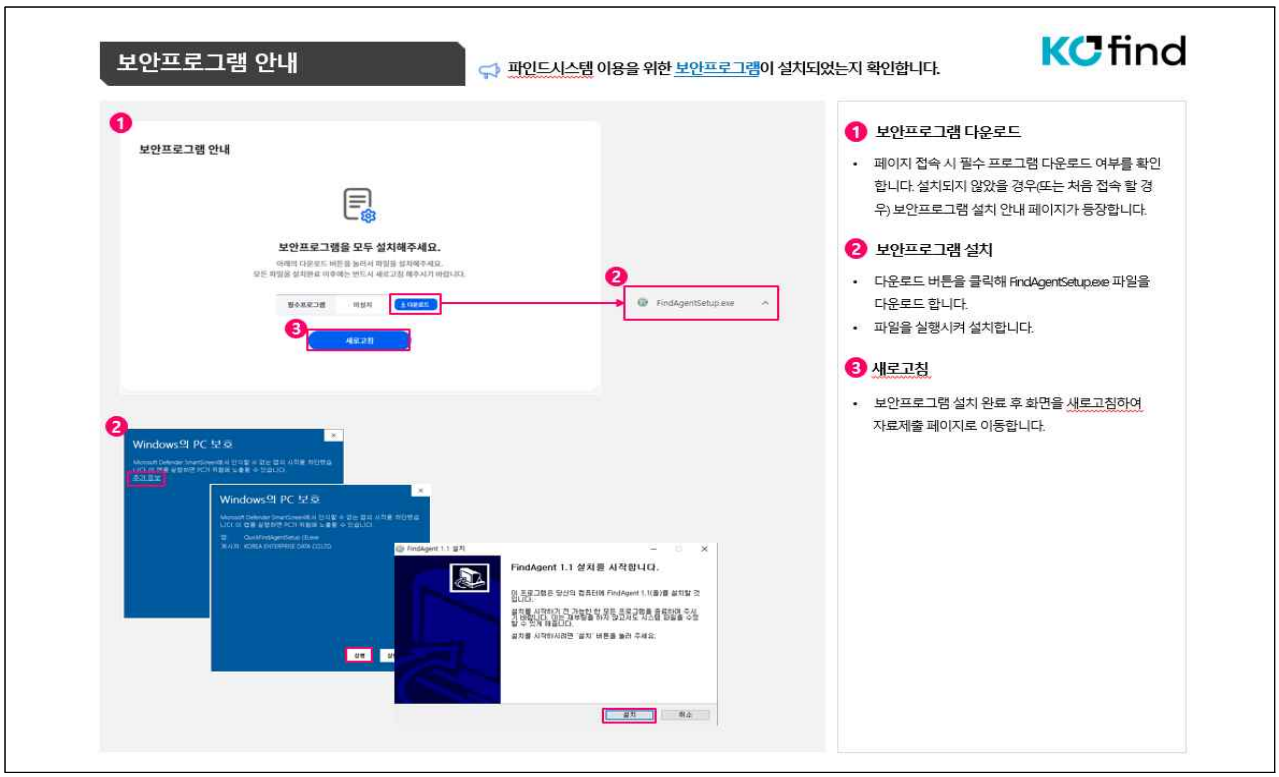
- 미등록시 성장성·잠재력 평가 시행 불가로 탈락 처리 예정 (접수마감일 이후 성장성·잠재력 평가 일괄 진행)

지원기관	자료 제출 URL
메인비즈	https://www.kofind.co.kr/fw/FWFWS01R0.do?useInstCd=51&prodGbn=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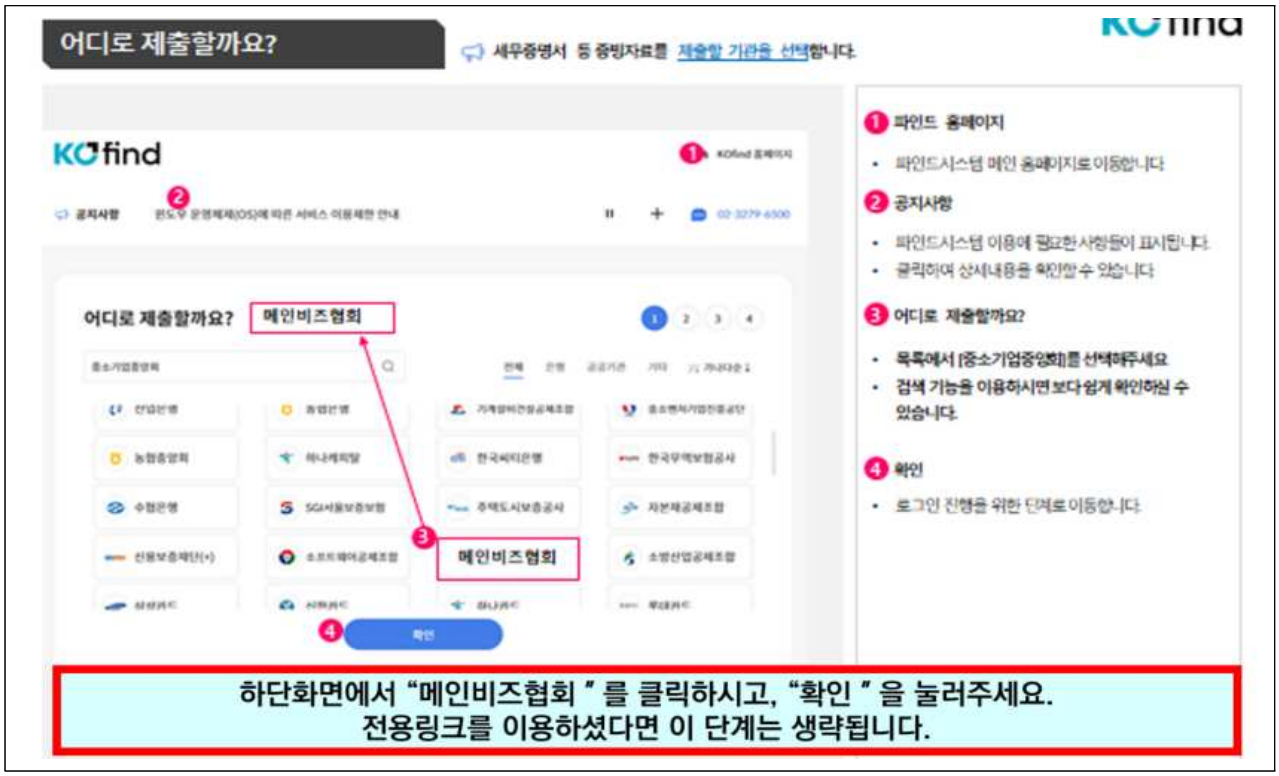
*** 시스템 오류 및 업로드 장애 문의 : KODATA 최신화센터 (02-3279-6500)**

붙임 4 성장성 · 잠재력 확인을 위한 서류 자동제출 방법 (신청기업용)

1. 보안프로그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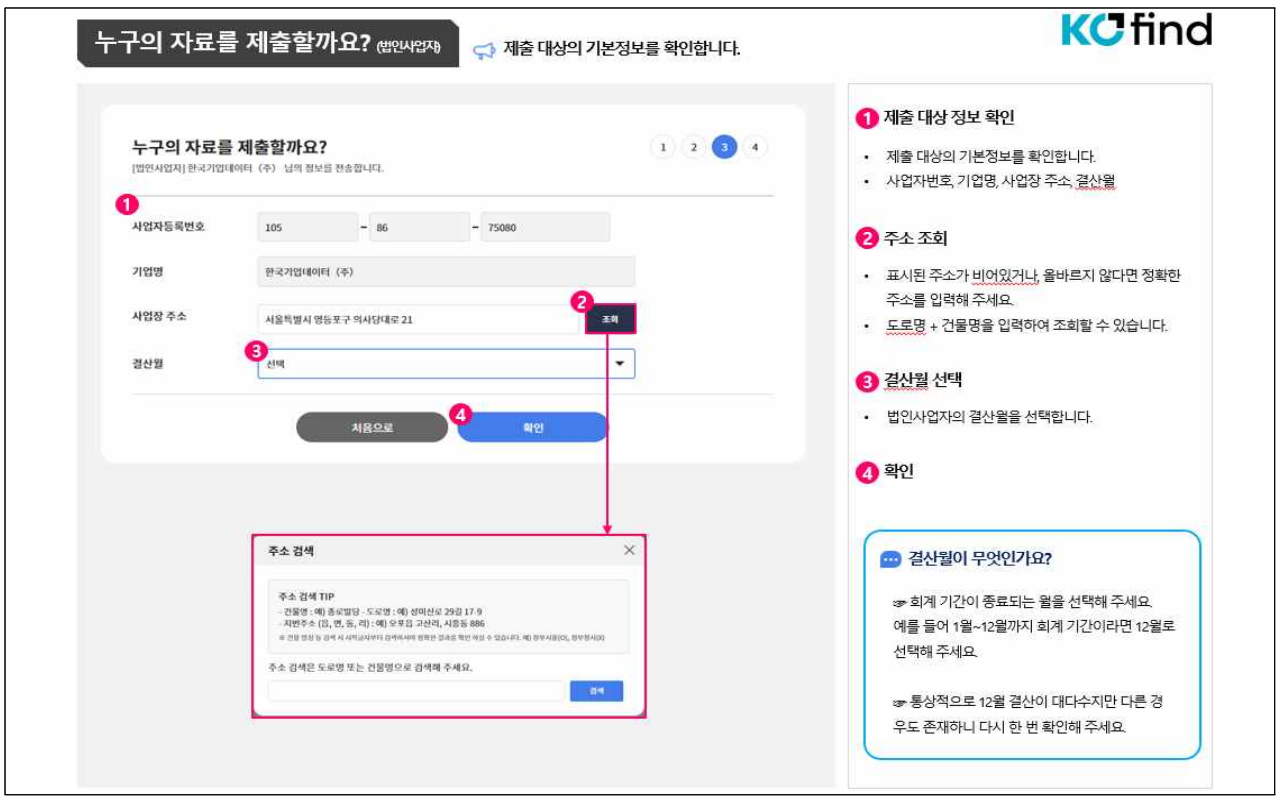
2. 서류 제출처 선택 → 메인비즈협회(검색 후 선택)



3. 로그인 진행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중 택 일



4. 제출 대상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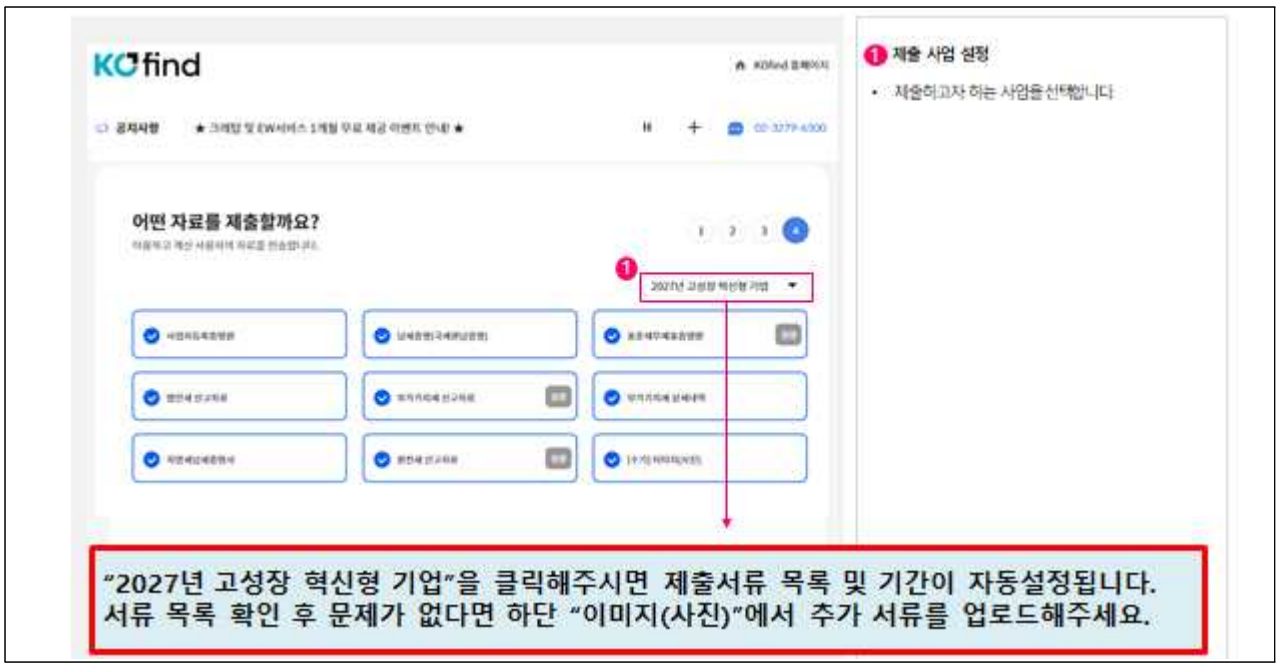


5. 제출 서류 확인

○ (자동제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법인세신고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및 상세내역,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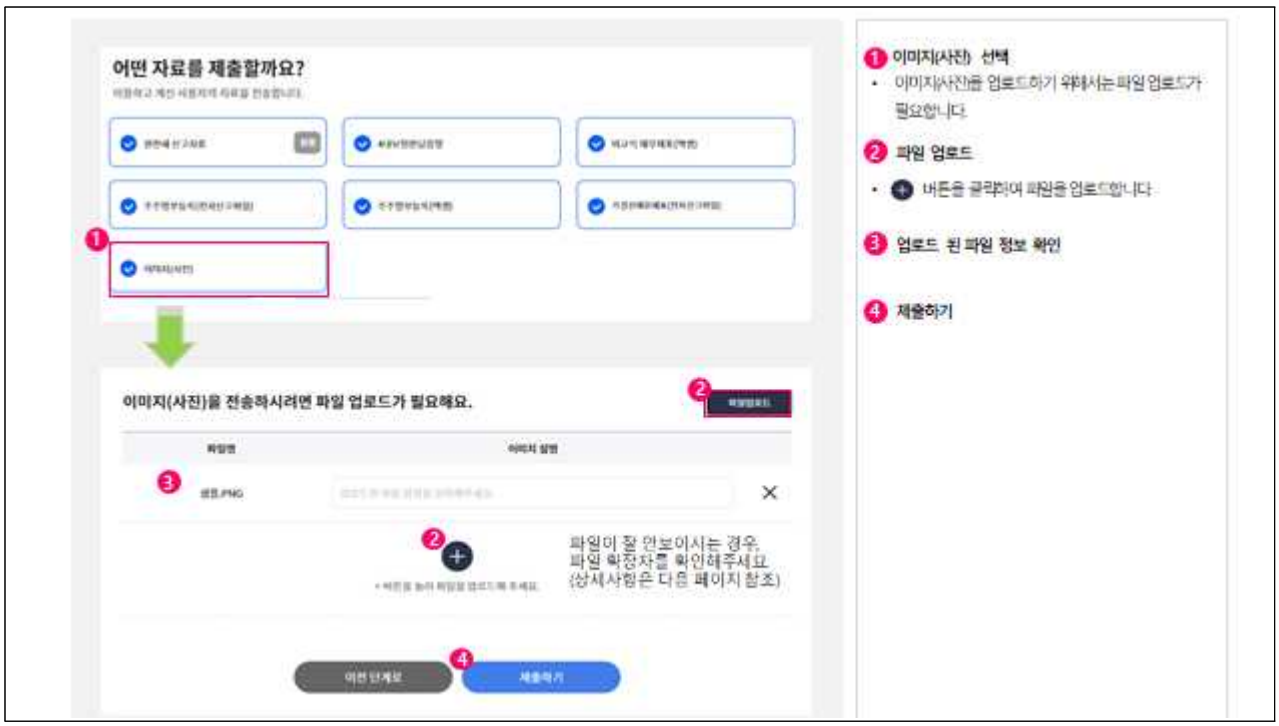
※ 기간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서류 목록 확인 후 "계속하기" 선택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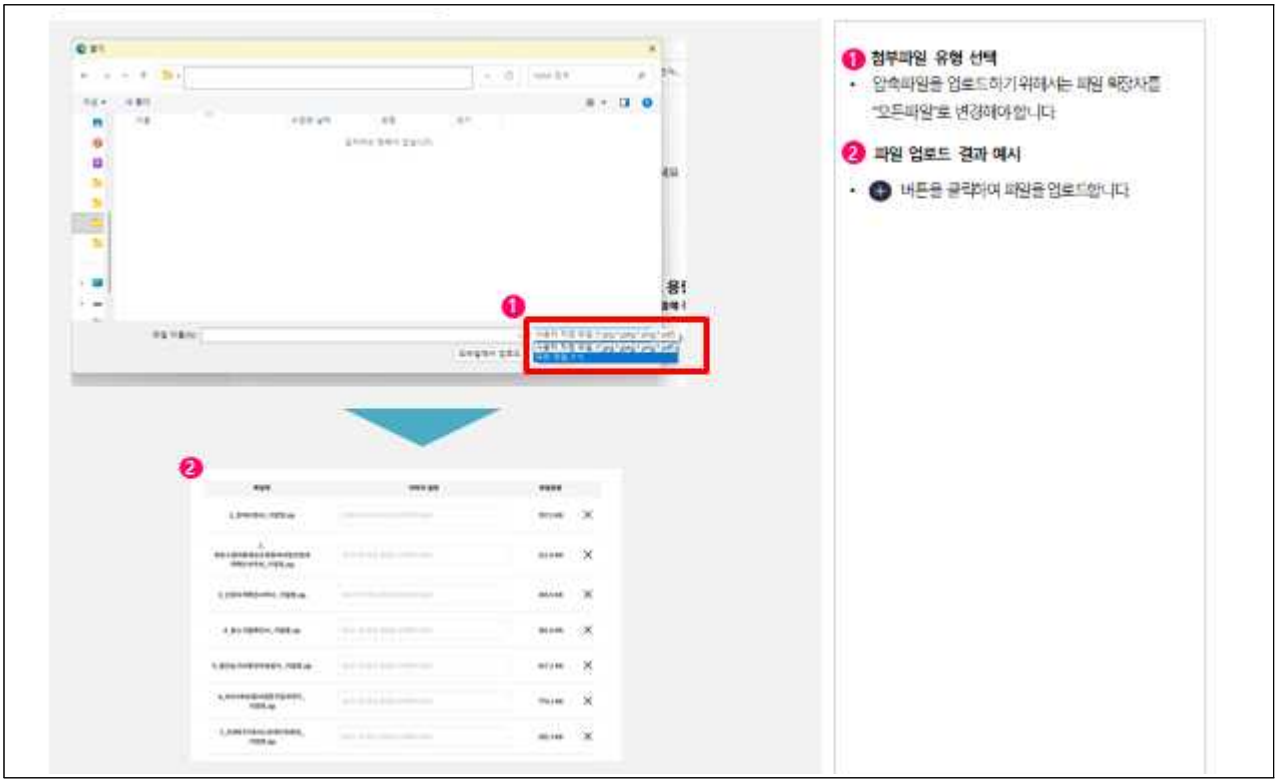


○ (수동제출) 참여신청서,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자격 확인 서약서 (법인/대표개인), 신청자격 확인 서약서,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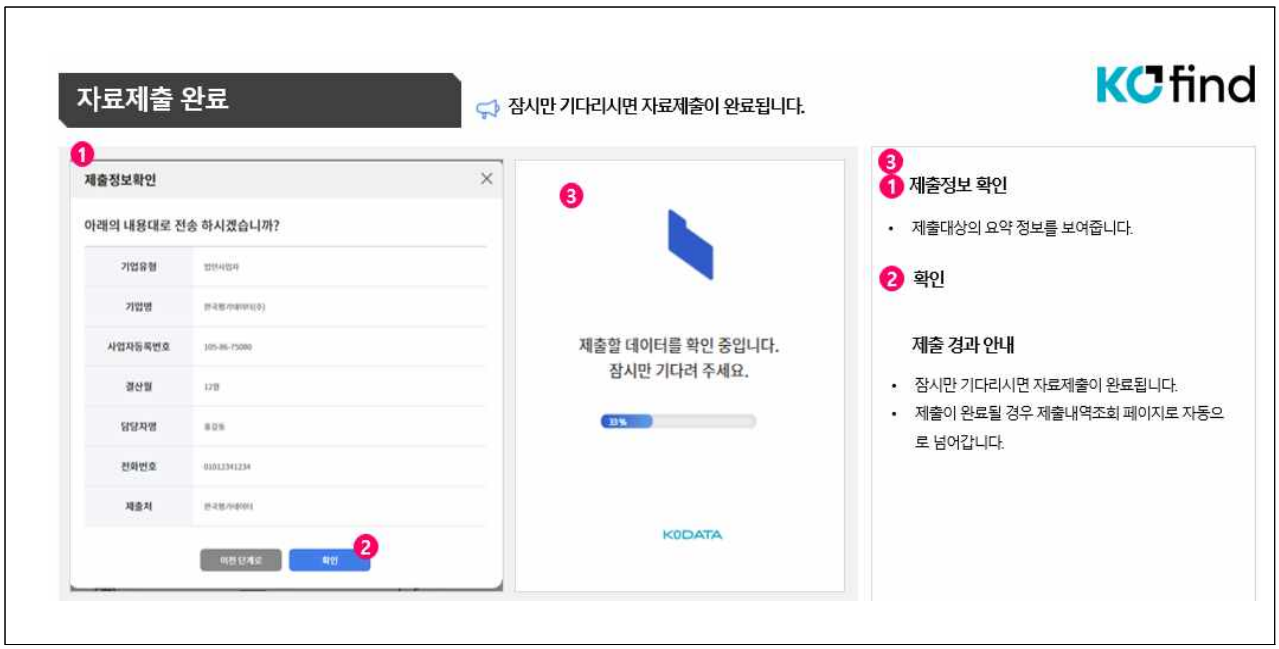
※ "파일 업로드" - "(우측 하단) 모든파일 보기" - 파일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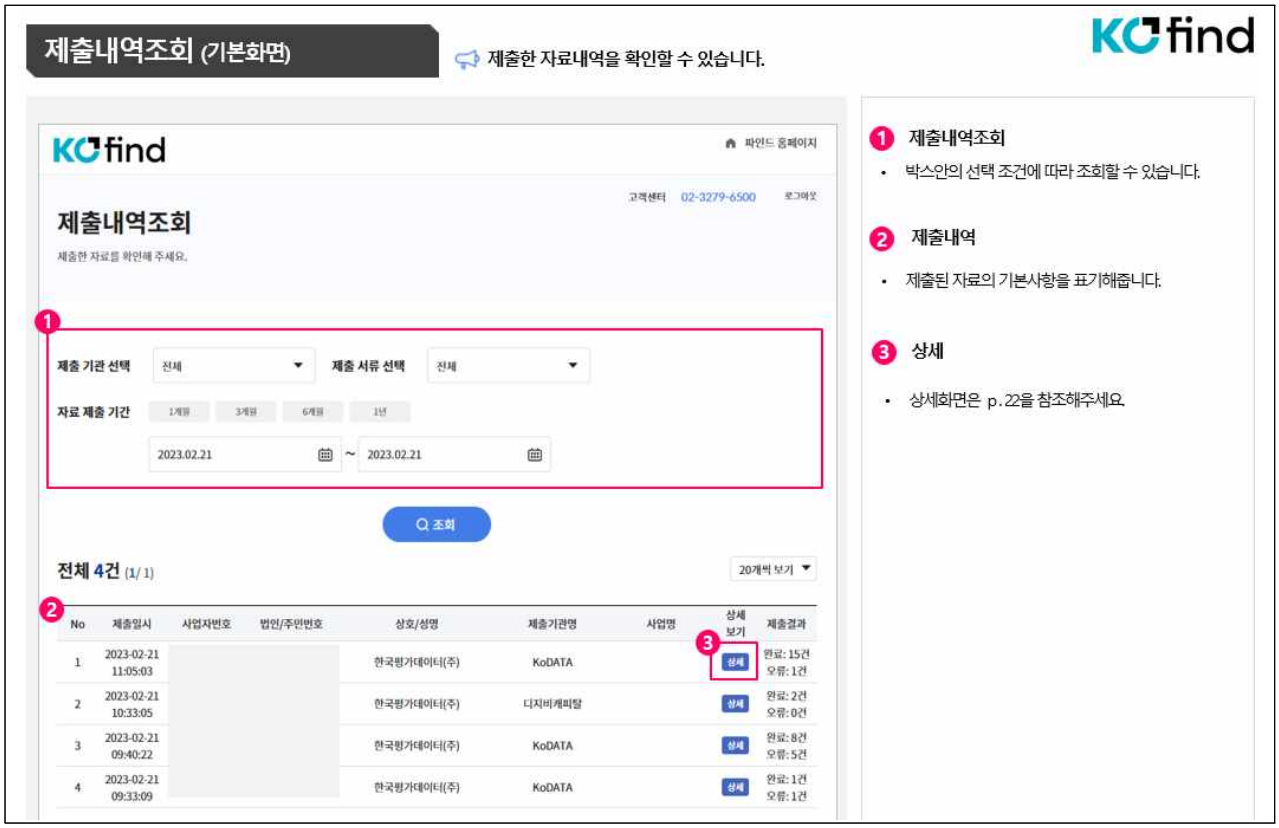
○ 수동제출 결과 예시



6. 서류 제출 완료



7. 제출내역조회(기본화면)



8. 제출내역조회(상세보기)

